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의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 공사비 1,010억원을 투입하여 '97년 3월 28일 착공, 2000년 12월 준공예정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6

2000. 7. .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6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과 동·남대문 패션상권 지원육성을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패션디자인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을 정함.

명 칭	위 치	기 능
서울산업지원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중소기업종합지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중소기업창업보육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송파구 잠실 1동 10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도봉구 창동 1-10	중소기업제품전시홍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중구 예장동 8-145 외 1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중구 을지로5가 40-3	패션산업 육성지원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사용료 :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 (생략)
 -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p>○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p>□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p> <p>□ 제정취지</p> <p>○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산업지원센터 등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시설과 2000년 7월중 개관예정인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 대한 시설설치운영과 민간위탁근거를 개별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p> <p>□ 검토결과</p> <p>○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99.11.5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 분리)는 개별조례로 운영중이던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등 유사한 5개 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98년 4월 30일 시행한 것이나</p> <p>○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개념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다 른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인적·물적 요소가 함께 포함된 영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유권해석기관인 행정자치부의 견해로 볼 때 서울산업지원센터, 서울에니메이션지원센터,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패션디자인센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전시판</p>	<p>매장(잠실, 창동)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로 설치목적이 주민복지보다는 지역개발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의 적용은 무리가 있었음을 감안하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은 기능이 유사한 시설별 개별조례로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도 유효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